

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 제도 운영 현황(년도)

1. 일반 현황 ※ 작성 및 제출 근거: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13조

회사명		전화번호		팩스번호	
소재지		대표자 성명			

2. 고령자 고용현황 ※ 전년도에 발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모두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..

① 전체 근로자 수(정규직, 일용직, 임시직을 모두 포함합니다) ※ 용역·파견근로자는 수급인(용역회사) 및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이고, 도급인(발주회사) 및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아님 ()명	55세 이상 근로자 현황		
	② 합계	55 ~ 59세	60세 이상
	()명	()명	()명
③ 고령자 고용률(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숫자를 적습니다) ※ 고용률 = (②55세 이상 근로자 수 / ①전체 근로자 수) × 100		()%	

3. 정년 제도 운영 현황 ※ 차등 정년 제도란 직급 또는 직종별로 정년을 다르게 설정한 정년 제도를 의미합니다.

④ 정년 제도 유형 (해당 번호 1개만 “○”표시를 합니다.)				단일 정년 제도		차등 정년 제도		정년 제도 없음		
				1		2		3		
⑤ 단일 정년 제도 채택기업의 정년 ※ ④ 정년 제도 유형 중 “1번 단일 정년 제도”에 표시한 사업장만 해당 연령 1개에 “√”표시를 합니다.										
60세	61세	62세	63세	64세	65세	66세	67세	68세	69세	70세 이상
⑥ 차등 정년 제도 채택기업의 최고 정년과 최저 정년 ※ ④ 정년 제도 유형 중 “2번 차등 정년 제도”에 표시한 사업장만 적습니다. ※ 예를 들어, 연구직 65세, 전문직 62세, 일반직 60세가 정년인 경우 최고 정년에는 65세, 최저 정년에는 60세를 적습니다.							최고 정년		최저 정년	

작성자: 소속 부서(팀): 직책: 전화번호: 성명: (서명 또는 인)

확인자(사업주): 성명: (서명 또는 인)